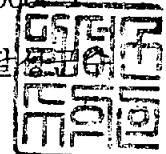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24
----------	-----

제출일자 : 2006. 9.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군정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 사이버회의 참석수당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안건 검토·제출 사항에 대하여 안건심의수당 지급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적용 범위를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도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비 변상이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 출석수당외에 안건검토·제출에 따른 안건심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행정자치부훈령 제159호, 행정자치부예규 제208호
- 나. 입법예고 : 2006. 8. 11. ~ 2006. 8. 31.(특이사항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거나 주요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공무원이”를 “군 소속 공무원이”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위원회 실비 <u>변상조례</u>	제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u>실비변상 조례</u>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거나 주요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신설></u>	제3조(일비)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